

I 지원 대상

1.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?

- '20.8.16~'21.7.6 동안 ①1회라도 집합금지·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②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이 지원대상입니다.
  - (집합금지)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른 중대본·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.
    -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,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.
  - (영업제한)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른 중대본·지자체의 영업제한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.
    -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,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.
  - (경영위기) '19년 대비 '20년 매출액이 10% 이상 감소한 업종(277개)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.

<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>

| 구 분        |            | 금액(만원)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|            | 매출액*<br>4억원 이상 | 매출액*<br>4억 ~ 2억원 | 매출액*<br>2억 ~ 8천만원 | 매출액*<br>8천만원 미만 |
| 집합<br>금지   | 장기(6주 이상)  | 2,000          | 1,400            | 900               | 400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단기(6주 미만)  | 1,400          | 900              | 400               | 300             |
| 영업<br>제한   | 장기(13주 이상) | 900            | 400              | 300               | 250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단기(13주 미만) | 400            | 300              | 250               | 200             |
| 경영<br>위기** | △60% 이상    | 400            | 300              | 250               | 200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△40~△60%   | 300            | 250              | 200               | 150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△20~△40%   | 250            | 200              | 150               | 100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△10~△20%   | 100            | 80               | 60                | 40              |

\* '19년 또는 '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

\*\* '19년 대비 '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

## 2. 소기업 기준은? 근로자 수 기준은?

### <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>

| 구 분  | 개별사업체<br>매출액 규모 | 개별사업체<br>매출액 감소 | 개업일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집합금지 | 소기업             | 관계없이 지원         | ~'21.6.30일 |
| 영업제한 |                 | 매출감소 시<br>지원    |            |
| 경영위기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
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,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.

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하며,

○ 숙박·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, 예술·스포츠·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, 도·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.

\* (10억원 이하) 숙박 및 음식점업, 교육 서비스업 등  
 (30억원 이하) 예술·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
 (50억원 이하) 도매 및 소매업, 정보통신업 등  
 (80억원 이하) 운수 및 창고업, 건설업, 광·농·임·어업, 섬유제품 제조업 등  
 (120억원 이하) 식료품·음료 제조업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, 전기장비 제조업 등

## 3. 종전과 달리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제외되었는데?

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합니다.

○ 다만,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중 매출감소율이 10~20%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됩니다.

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#### 4.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지?

-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합니다.

## II 세부 기준

#### 5.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·영업제한의 의미는?

- 중대본 및 지자체가 '20.8.16~'21.7.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·영업제한입니다.
  - 집합금지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“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”을 의미합니다.
  - 영업제한은 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“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” 또는 ②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“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”을 의미합니다.
    - \* 예) ① 21시 ~ 05시까지 영업금지, ② 호텔 객실 50% 미만 영업
- 중대본·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하였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

#### 6. 방역조치 기간의 장·단기 구분기준은?

-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, 장·단기에 각각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하였습니다.
  - 집합금지는 6주 이상은 장기, 6주 미만은 단기,  
영업제한은 13주 이상은 장기, 13주 미만은 단기에 해당합니다.
-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의 방역조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,
  -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·단기를 판단하고, 이에 맞는 지원금액을 지급합니다.

## 7.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?

-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내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'19년 대비 '20년에 10% 이상 감소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.
  -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, 업종의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.
- ※ 다만,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 필요

## 8.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?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?

-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
  - 年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매출액의 연간 환산액\*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합니다.
- \* 예) '19.3월 개업자의 '19년 신고매출액은 9~10개월간 영업한 매출액이며, 12개월로 환산 적용

## Ⅲ

## 자금신청 관련

## 9. 언제·어디에 신청 가능한지?

-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.
- 2차 신속지급은 8월말,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이며 별도 안내하겠습니다.
- 8.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및 이후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모두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(희망회복자금.kr)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 10. 문자도 못받고,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데?

-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모두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-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.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'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